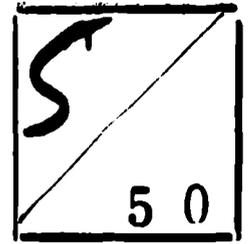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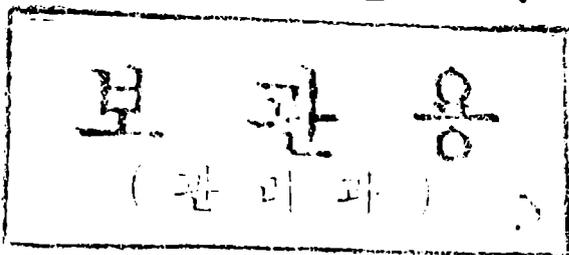


92-1-25

자료	
번호	



관문점회담에 관한 국내 정책 전환문제점



1972. 5

국토통일원

판문점 회담에 관한 국내 정책 전환 문제점

1972. 5

신 일 철

목 차

1. 南北接觸의 概念과 性格	1
2. 冷戰型「統一」名分の 止揚과 “平和”名分の 定立	5
3. 南北接觸의 基本的 課題와 方式	10
4. 南北接觸에 의한 「存在」問題接近	18
5. 南北接觸에 대한 对内外的 對備策	24

본 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공식의견이 아님.

1. 南北接觸의 概念과 性格

南北接觸의 개념은 애매하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의 通念上 南北間의 外交的次元의 公式的「交涉」이나 交流 政治會談以前段階를 指示하는 것이 었다. 南北接觸은 休戰線下의 特殊狀況에서 諸般制約을 감안한 아주 소극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의의는 직접적인 意思交換, 對話理解增進의 기능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南北接觸은 그 消極的概念規定上, 公權力에 의한 公式的交涉以前의 豫備段階에 불과하고 最少限 既存 實定法體制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 限度內에서 外交慣例上 政策의 단계와 交涉과정은 구분할 때 政策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豫備的交涉의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南北接觸의 과정에서는 政府責任下의 「試函」의 성격에 머물고 그 接觸의 결과에 대해 곧 規定되지 않는 裁量의 餘地가 크게 남아 있는 接觸行爲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板門店에서의 南北記者간의 가벼운 立談에서 南北赤會談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他國의 예를 든다면 國交關係나 그밖의 公式的 關係가 成立되지 않은 북괴와 日本「朝日新聞」간의 訪問, 歎談, 意見交換정도로 接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前例로서 美·中共간의 「接觸」은 와르샤바에서 열렸던 非公式的인 美·中共大使級 비밀會談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南北接觸은 交流—物的 或은 人的交流—와 구별될 수 있으나 그 境界는 분명할 수 없다. 실제로 南北赤會談이 本 會談단계에 들어가 會談場所는 서울과 平壤에서 交替해서 개최하고 報導記者가 수행할 때 그 결과 記者交流가 행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南北

交流의 公式的開始이 전에도 一種의 交流現象은 얼마든지 介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南北接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接觸의 徵表는 (1) 다만 南北兩側人士가 직접 對面, 意思交換 더 나아가서 協議할뿐 公式的 交涉關係与否는 不問에 부쳐지는 그 非公式性과 그 會談內容에 구애받지 않을수 있는 高度의 自由裁量의 餘地이외에는 별로 없는것 같다.

따라서 南北接觸단계에서는 相互간의 存在承認問題가 전혀 排除되고 따라서 交涉相對者의 地位, 資裕에 구애받지 않을수 있는 성격 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南北接觸上의 重要한 問題는 公權力의 代表性이 不問에 부쳐질수 있는 兩側의 非公式的民間代表 내지는 公權으로 부터 中性的일수록 便利하다는 代表의 中立性이다. 북괴가 會談역두에 南北 赤會談을 「民族内部問題」로서 들고 나온것은 그 의도가 첫째로는 大韓民國의 유엔에 의한 唯一代表性에 대해 挑戰한 것이고 둘째로는 板門店에서의 프예블로프나 K A L 樸拉北事件때 協商場所를 「韓 半島內」로 지정함으로써 韓國問題의 國際化에 대한 名分에 도전한 것으로 이해되고 셋째로 그 協議에 兩韓의 民間團體代表와의 接觸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앞으로 南北接觸의 人的事項에 있어서 民間 接觸主義를 貫철하려는 징조로 예견된다.

이제 가능한 南北接觸의 性格은 (1) 反國際化 即 「民族内部問題」 化로서 統一問題에서 유엔決議의 權威를 否認하고 民族自決의 原則을 前面에 내세우려는 북괴의 底意와 (2)反公權力的인 民間接觸型을 고집함으로써 相互存在承認의 難題를 뒤로 留保하고 (3) 70年代에 들어서서 유엔 등 國際政治에 감돌고 있는 普遍性原則을 先取할 수

있는 緊張緩和에 있어서의 「當事者協議優先의 原則」을 確保하여 북괴의 法的地位를 높이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南北接觸은 南北赤會談과 앞으로 韓國化될 軍事停戰會談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할 때 南北間에 妥結해야할 設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前提할 것은 現下 시도중인 南北接觸은 韓國의 分斷化를 그 原因부터 解決하려는 統一作業의 준비단계는 결코 아니고 列強間에 이미 양해된 것으로 보이는 分斷狀態의 凍結—公式化作業중 南北간의 當事者들이 妥結해야할 先決問題의 예비적논의로 이해된다.

分斷의 固着化란 戰爭狀態의 對決의 緩和 即 一種의 「講和」措置는 必要로 한다. 이 講和措置는 列強간의 保障에 앞서서 南北兩側의 政治實體 다시 말해서 當事者간의 諒解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勿論 南北接觸 그 자체가 그 性格이나 權限을 넘어서 講和措置를 위한 外交的 交涉까지 별릴 수는 없고 다만 그 業地를 마련해 주는데 그 任務가 完遂되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다. 事實上 南北接觸이 名分뒤에 숨어서 추구하는 目標은 南北間의 軍事的緊張의 相互解消에 있고 政治的 結合이나 傳統的交流 등은 우선 除外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韓國問題에 대한 現實主義的 接近에서 귀결된 觀點이라 하겠다.

오늘의 南北接觸의 第一次의 目標은 相互不可侵의 軍事的協約을 달성하는데 있고 그 措置로 인해서 더이상 列強이 韓半島內에서는 勢力均衡을 다투는 競爭의 餘地를 주지 않는다는데서 모든 措置에 優先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의 相互存在承認問題와 같은 法的地位 문제나 政治協商 傳統交流는 오히려 다급할것 없는 第二次的 과제이거나 때로는 이 第一次의 目標達成을 위해 手段으로 이용되거나

相換될 담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南北接觸의 性格에 대한 現實主義的接近은 일단 定立하고
나면, 接觸過程에서 빨리 名分的次元을 벗어나 서로가 솔직하게
되도록 接觸을 유도하는데 우리가 主導權을 장악해야 함 것이다.

2. 冷戰型 統一名分の 止揚과 「平和」名分の 定立

이상과 같은 南北接觸의 性格과 目標의 特殊性은 70年代韓半島를 위한 國際的限境에 의해서 規定된 것이다.

오늘의 南北接觸은 우선 거의 不可抗力的인 他律的「場」에서 시작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民族的 立場에서 自律的인 폭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國際的으로 강요된 「韓國化」의 方向이 기실 自律的인 自己決定性의 餘地인 것이다.

그러면 이 「韓國化」는 왜 南北接觸과 그 目標로서의 分析狀態의 凍結—「講和措置」— 統一의 留係—「一民族—國家」原則의 否定 등 일련의 展開過程을 예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70年代 國際政治措置의 變動을 分析함으로써 導出될 수 있는 未來志向的 假定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 70年代에 들어선 韓國問題는 새로 조성된 戰後體制의 改篇으로 인한 努力均衡의 變動으로 그 性格과 方向이 크게 變化했다. 특히 닉슨독트린의 具體化 過程에서 韓半島에 對 「非美國化」即 「韓國化」의 폭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韓國化」란 韓半島에서의 美國勢力의 收去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美·산二強의 兩極化體制와는 다른 多元化秩序속에서 韓國問題處理의 方式이 주로 美·中共和解의 場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國際的環境에서 韓國安保가 제자리를 占하기 까지의 過渡期에는 상당한 不安定과 空白이 예상되고 새 極東秩序속에서 韓國의 變化된 地位를 確保하는데는 이전의 冷戰期와는 달리 自己決定力의 폭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自己決定力의 發輝의 제一라운드가 南北接觸이 아닌가 싶다.

원래 70年代以前の 韓国問題는 다음 3가지 요인으로 특징지워진다. 即 (1) 戰後 美소간의 冷戰的對決에서의 未解決의 章으로 남아 戰後처리의 과제로 되었고 따라서 三大分斷 國家問題의 하나로서 一括처리될 수 있는 公算이 크며 (2) 1950年 6·25 動亂으로 UN이 介入한 特殊性格을 띤 分斷國家問題로서 現軍事分界線에서의 停火(cease-fire)가 북괴와 UN軍司令官간에 이루어졌으므로 停火에서 講和로 나갈때 UN介入의 解消가 결과될 우려가 커졌고 (3) 6·25 動亂때 소위 「抗美援朝」의 支援軍의 性格으로 韓国問題에 介入하게 된 中共이 70年代에 와서 소련에 앞서는 決定的影響力을 행사하는 後見者로 등장했다는 狀況으로 미루워보아 50年代까지의 韓国問題의 國際的環境과 그로부터 20年後인 70年代의 그것 사이에는 큰 構造的變化를 인정할 수 있다.

70年代 以前까지 韓国統一問題는 名分的 統一論을 벗어나지 못하고 休戰下의 現實과 민족적 義務으로서의 統一名分사이의 乘離는 큰 것이었다. 그 乘離가 커지면 名分은 現實에 의해 재조정되게 마련이다. 새로 조성된 東北亞의 努力均衡이 固定하는 가운데 70年代東北亞 政治秩序가 形成된다. 그 힘의 均衡上의 變化라는 現實에 相應하는 名分の 再定立이 요청된다. 따라서 南北接觸은 50年代型의 「統一」概念의 修正을 요청케 된다. 50年代型의 「統一」개념은 現實의 分斷的狀況을 망각한 民族國家(nation-state)建設의 願望에 기초한 名분이거나 現狀打破的인 「再統一」의 口號였다. 기실 「再統一」이란 現實主義的 權力의 世界에서는 一方的 「武力統一」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는 아주 緊張激化的 슬로건으로 이해된다. 緊張激化란 韓半島에서 列強간의 힘의 對決이 再起될 수 있다는 바탕에서 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힘에 의한 統一」, 더 나아가서 名分的次元의 統一이 지닌 現實的欠格을 緊張激化, 戰爭을 각오해서라도 武力에 호소함으로써 現狀의 變動을 행하려는 統一戰爭 不可避論으로 귀착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名分爲主의 統一論은 現實上 戰爭不可避論, 現狀打破의 主戰論이 된다.

이와같은 統一개념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名分主義에 사로잡히게 되면 平和는 언제나 희생할 수 있다는 覺悟가 서야한다. 그리고 名分主義는 事實上の 存在 (entity)를 인정하지 않고 名分을 위해 事實이나 現實은 無視해도 무방하다는 고집으로 나타난다. 통상 敵對關係에 있어서 名分主義는 相對方의 存在否認意志이다. 여기서 英國의 內戰時代에 산 哲學者 Thomas Hobbes가 利己的欲求의 主体가 지닌 自然權이 「戰爭狀態」를 야기할때 第二의 自然法으로서의 理性을 들어 서로간의 平和와 安寧을 위해서는 「契約狀態」(a state of contract)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統一論의 오늘의 次元은 Hobbes가 말하는 「自然狀態」에서의 對決에서 相對的인 「契約狀態」에 있어서의 競合에로 移行되는 것이 現實的 觀點이라는 것이다.

과거 20餘년간 現實的 分斷狀態에도 불구하고 名分上 南北間에 「相互存在의 否認」即 Abibi-politik로 일관해 왔다. 50年代에는 以北땅에는 우리가 公認할만한 아무런 公權力도 없고 따라서 接觸・交渉・協商할 相對者의 不在라는 「不在政策」을 고수해온 것은 일응 당연하다. 더욱이 유엔의 國際的權威에 의한 大韓民國의 唯一代表權主張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名分」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70年代의 국제적 현실은 이 名分의 고수

를 위해서는 「힘의 政策(politik der starke)」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對外的緊張緩和動向과 곧잘등을 이르게 국제적 孤立을 면할수 없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名分이나 現實이나의 兩者択一앞에 서게 되었으나 결국 現實쪽을 따르는 일은 거이 不可抗力에 가깝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게 되었다. 그 点에서 南北接觸은 「힘의 政策」上的 統一개념을 修正하는 첫거름이 된다. 따라서 現實主義的 統一개념의 再定立도 아울러 결과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和解」政策의 실마리로 간주되게 될것은 거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和解」政策의 結果는 再統一이나 하면 반듯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統一努力의 現状打開的 接近을 留保하고 分断의 固着化作業에 순응하면서 統一의 名分에 대신해서 「平和」의 名分이 先行하게 되는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1970年의 8·15 宣言은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韓國問題의 性格變化에 대비한 適應措置인 동시에 북괴集團의 好戰的 統一概念에 대한 警告的 性格을 가진 점에서 劃期的인 것이다. 이는 결국 북괴의 武力挑發로 표현되고 있는 軍事主義的 現状打破的 統一政策과의 國際政治的對決場에서 主導權을 장악할 수 있는 「和解政策」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南北接觸의 和解政策的接近은 오늘과 같은 周邊列強의 權力措置變遷期에는 반듯이 순탄하다고 볼수는 없다. 특히 70年代前半期の 韓國의 國際的環境은 對外面의 和解潮流와 對内面의 緊張再發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南北接觸이 초래하는 平和의 名分이 계속 挑戰에 직면하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平和의 名分」을 구비하지 못한 「南北接觸」

의 虛構을 결과하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사실상 南北接觸은 脫冷戰期에 대응하는 非軍事的 安保戰線으로서의 역할을 그 本質로 하며 그 限界性도 統一이 아닌 統一留保下의 「分斷狀態凍結에 의한 平和」임을 뚜렷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아진다. 이것이 冷戰型安保論의 弱點을 補完할 수 있는 새 分野인 것이다.

南北接觸은 우리의 對外的 現實急交와 對內的 衝動에 대한 基本的 適應方式이 冷戰型의 脫皮라는 大前提우에서만 所期의 成果를 우리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統一論議는 대개 對內的 統一意欲에 대한 抑制된 제스처로서 기실 그 接近의 對象자체가 北韓이 아니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北괴나 北韓住民을 接觸對象으로 할때 도리어 우리의 適應方式은 自動적으로 通行的이 되거나 소극적 自己應化(self-acoomodation)에 빠질 우려가 큰것이다. 歷史上 우리는 對外로부터의 Impact에 직면 했을때마다 中原에서 明에 대신해서 淸朝가 대두되던 丙子胡亂時나 西歐列強이 東方進出을 해온 大院君때에나 通行的 自己應化에로 움 추러지고 그와 반대로 積極的 適應方式으로 自己脫皮를 敢行한 例를 보지 못했다. 그러한 適應型은 19세기 大院君의 銀國政策에 典型的으로 表現되었다.

넓은 名分의 脫皮는 그에 대치될 새로운 名分의 定立과 이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形成을 요청한다. 現下 南北接觸 단계에 서의 새로운 統一名分 即 現狀固着化努力에 대한 넓은 國民的 合意를 구축하는 作業이 進行되어야 한다.

3. 南北接觸의 基本的課題와 方式

現下 南北接觸은 비록 當事者간의 接觸이라 하더라도 國際的 緊張緩和作業을 韓半島에 具體化하기 위한 他律的 要請이라는 點에서 그 制限된 課題가 무엇인가가 귀결된다. 南北接觸은 그 課題로서 國際化되었던 紛爭을 일단락 짓는 戰後問題處理의 一環으로 分斷된 現狀의 公式化作業의 實務者協議에 불과한 것이다.

韓半島에서 現狀의 公式化를 위한 美國의 構想은 관계된 列強과 의 努力均衡이라는 大前提에서 具現됨으로 어디까지나 分斷國家問題의 根本原因의 解決을 위한 作業은 적어도 現在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點 — 이 點에서 南北接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넘어서는 困難한 境界가 무엇인가 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南北接觸이 결과할 成果는 分斷國家 그 자신의 再統一은 勿論 아니고 다만 그 問題外部에 있는 對外的介入形式의 變化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即 分斷國家의 存在方式은 變動된 努力均衡體制에 適應시키는 作業을 形式上 當事者協議에 맡기는 것 뿐이라고 하면 過言일까.

우선 70年代初에 韓國에서 時急히 조정되어야 할 國際政治的 이슈는 (1) 韓國에서의 유엔軍의 介入問題 (2) 유엔과 북괴간의 停戰會談의 代表者問題 (3) 現軍事分界線의 非軍事化問題 (4) 유엔에서의 法的地位問題등 어느하나 分斷의 原因 그 자체의 除去나 再統一과 直結되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列強들간의 分斷韓國의 凍結을 위한 「當事者간의 妥結」節次를 거쳐야 한다는 對外的要請이 「韓國化」의 文脈으로 表現되고 있음 따름인 것이다.

現在 進행되는 南北赤會談이나 韓國人代表로 체모를 갖출 軍事停

戰會談에 있어서의 「韓國化」 即 南北接觸은 실상 民族問題로서의 統一 또는 統一된 民族國家의 達成으로서의 統一作業과는 인연이 먼것임은 勿論이다.

南北接觸의 議題가 무엇인가는 최근 美·中共接近에서의 美·中共간의 意思表示에서 逆算해서 우선 推論해 보는 도리밖에 없다. 우선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에 대한 키신저補佐官의 부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시사했다.

(가) 台灣問題에 대해서 그는 「窮極적인 解決은 즉 台灣과 中共(「中華人民共和國」이라 呼稱했음)과의 窮極的關係는 台灣과 中共과의 直接協商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한다.」

(나) 다시 그는 「台灣은 中國의 國內問題」라는 견해로 포명한 것으로 「본인은 우리가 台灣의 將來를 北京에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即 中華人民共和國과 台灣간의 將次問題는 台灣과 中華人民共和國사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고 조심스럽게 言明했다.

中國問題에 대한 키신저의 論理가 韓國問題에도 完全히 그대로 適用된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韓國問題에 대해서도 「南北兩者의 將次問題」는 兩當事者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히 外交的인 言辭로 말할것을 想定해 볼 수 있다. 먼저 前提해 놓것은 名分上 既存公約의 준수와 「將次 當事者간의 國內問題」에의 不介入政策과는 상치되지 않는다는데 닉슨 獨트린의 妙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는 美國의 極東政策에 있어서 現實的인 政治集團이나 勢力集團을 個別的으로 모두 그 存在를 認定하면서도 그들간의 國內問題로서의 再統一 등에는 「不介入」原則을 수행한다는 態度로 이해된다.

만일 南北接觸의 機能이 밖으로 부터 요청되는 면이 있다면 分

斷된 狀況의 凍結作策에 까지 直接 介入하지 않고 事後保障만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東아시아에 대한 인터뷰에서 美國務省 elliott 副次官補는 「獨立이냐는 독트린의 基調」라고 언명했다. 이 「獨立」이란 지극히 現實主義的 文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시아에 관련된 四大強國사이의 安定된 勢力均衡의 現實과 더이상 現狀打破를 위한 角逐을 벌이지 않는다는 消極的 政策概念이다. 따라서 「獨立」이란 더이상 現狀打破의 餘地가 남아 있지 않다는 現實認識을 요청하면서, 列強이 「合法的 利益」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段階인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南北接觸의 과정은 이른바 「將次의 國內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統一外的인 周边列強간의 「安定된 均衡關係」에의 對內的 順應努力에 힘써야 하는데 한정되는 것이다.

그점에서 南北獨의 과정은 統一問題 내지는 民族問題의 原因的 解決을 判斷中上한 過渡的性格에서 究明되어야 한다. 따라서 「現狀固着化」에 南北兩當事者가 合意하는 先決問題와 아울러 相互存在의 어떤 形態로의 承認까지 가는 반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限定된 努力이 南北接觸의 豫備的 性格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南北接觸은 단순한 停火(cease-fire) 狀態를 或種의 「講和」措置로 옮겨 놓는 狀態變化를 위한 基礎的 作策을 해야 한다. 최근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見解가 대체로 美國닉슨行政府의 見解와 一致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본다.

1971年 7月19日 中共의 周恩來는 米國人 학자들과의 對談에서 처음으로 韓半島에서 停戰이 된 이래 18年동안이나 戰爭絡結措置가 되어있지 않다고 言及했다. 이보다 6日前 7月3日 軍事停

戰委 유엔軍側 首席代表 로저스도 首席代表를 韓國人으로 교체하자는 인련의 「板門店會談의 韓國化」에 대한 見解를 표명했다. 이 문제는 이미 한해전인 1970年 8月 高大臣研이 주최한 韓國統一國際學術會議에서 미국의 moley教授 등이 「韓國人の 위신을 높혀주는 일을 板門店會談에서 부터 시도하여 南北接觸의 通路로 삼는것이 좋으리라」는 意見을 표명한바 있고 駐韓美大使도 美上院外交委에서 板門店에서의 「南北間의 對話」를 宗용한바 있음을 証言했다. 이 싸이밍턴委員會의 韓國關係顧問은 70年 2月에 實施되었으나 同年 9月 13日 公開되었다.

한편 中共의 周恩來는 다시 1971年 8月 5日 James Reston과의 對談에서 南北接觸의 當面課題가 무엇인가를 推定할 수 있는 注目되는 發言을 했다. 周는 韓國問題에 言及하면서 「내가 言及할 것을 잊은것이있다. 앞서 日本問題는 논하면서 韓國問題(「朝鮮問題」)는 논의하지 않았다. 아시다싶이 한국에는 다만 休戰協定만이 있고 아직까지도 講和條約은 없었다. (AS you know, there is still only an armistice agreement in korea, and there ha been in peace treaty)」라고 말하여, 앞으로 한반도에서 着手해야할 과제는 韓國亂의 戰爭終結措置로서 「講和條約」의 成立을 力하고 있다. 이점에서 周는 休戰下의 軍事分界線을 「講和措置」를 통해 固定-公式化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取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講和條約」이란 原則上 國家間의 戰爭을 終結시키는 外交節次인데도 불구하고 兩交戰主体를 通常的인 國家關係와 別로 구별해서 表現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點에서 暗暗리에 兩側을 對答한 法的實體로 간주하고 있는데 주목하게 된다.

또한 周는 同對談에서 「戰爭終結措置」과정에 들어가면 南北間의

두 政治实体가 名實共히 交戰当事者가 되는 동시에 講和의 主体가 되어야 하고 유엔軍이나 「支援軍」의 자격을 가진 外軍의 疎外를 전제하고 있다. 即 「韓國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兩側간의 和解를 가져오게 하고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向해 움직이는 方法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To solve the Korean question a way should be found to bring about a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sides in Korea and to move toward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이 周의 言明 가운데는 韓國問題 解決의 方法으로서 우선 「兩側의 和解」를 거론하고 있다. 이 「和解」도 역시 中共의 對韓 外交政策面에서 南北当事者의 接觸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中共은 名分爲主의 共產化 統一論을 뒤로 미루고 現實主義的인 韓國의 兩側의 存在는 對等하게 認定하고 兩側간의 和解라는 一種의 共存論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는 그 眞意가 무엇이든 새局面을 시사한다.

周恩來의 發言內容으로 判斷해볼 때 中共의 韓國問題 處理方案에는 대개 二段階가 설정되어 있어서 (1) 條一段階 - 우선 休戰後 18年間 未決로 남아있는 韓國事態의 講和措置 (2) 第二段階 - 韓國統一問題 그 자체의 解決을 위한 1954年 제네바會談型의 政治會談統開의 두 단계를 우선 区分하고 있다. 제一단계에서는 外軍撤収, 유엔介入의 解消 南北間 当事者간의 「講和」措置에 그치고 第二段階에 가서 韓國統一을 위한 政治會談을 開催하자는 것이다. 周의 韓國問題接近의 二段階論에서는 南北接觸은 단지 戰爭狀態 (state of war)의 종결을 위한 南北間의 軍事的對決의 妥結에 국한되고, 南北間의 統一問題는 第二段階의 과업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意圖를 간취하게 된다.

이러한 美·中共의 國際政治的 利害關係에 국한해서 볼때 南北接觸은 軍事的側面의 緊張緩和措置에만 主眼點이 있게 되고, 軍事分界線의 「韓國化」에 대한 當事者合意와 或種의 「講和」措置만 성립시키는데 目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講和」措置는 미국을 위해서는 介入度의 減少 講和相對者가 아닌데서 오는 難色을 免할 수 있고 中共을 위해서는 韓國問題處理에서 中共이 소련을 疎外하고 主導權을 잡게 되고 북괴의 現實的 地位도 아울러 保障해 준다는데서 그 利害가 一致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南北接觸이 만일 순조롭게 진행되어 戰爭解決措置까지 물고 간다면 이는 東北亞緊張緩和의 公式化가 美中共 協調體制에서 이룩된 것이 될 수 있으나 萬一 이 方法이 成功하지 못할때에는 美·中共以外的 強大國이 깊이 介入될 公算은 커질 것이다. 美·中共 이외의 強大國이란 여기서 日本 或은 소련을 의미한다.

그러나 美·中共協調體制下的 東北亞秩序의 形成이라는 場가운데서 南北接觸에 관한 問題를 分析할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要因들이 고려될 수 있다.

- (1) 韓國에서 「戰爭狀態」의 종결을 위해서는 南北兩側의 當事者가 만나 對話하는 接觸—交涉은 不可欠의 要件이다.
- (2) 이로 인해서 유엔등 對外的 介入의 名分은 감소되는 한편, 「民族内部問題」 또는 「民族自決의 原則」등 새로운 名分이 대두되게 마련이다.
- (3) 南北接觸의 兩側背後에는 美·中共의 意思가 決定的 역할을 하게 되고 相對的으로 日本이나 소련의 影響力은 微微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소련의 阻止作用이 예견될 수 있다.
- (4) 脫冷戰的 脫이데올로기의 次元에서 전개되는 南北關係의 再調

停은 實質的 当面課題 即 軍事的 緊張緩和라는 主流에서 行해질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南北赤會談과 같은 人道的 接觸은 軍事停戰會談의 變形이란 当面目的의 手段的 性格을 띠게 되고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豫備的 試圖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5) 따라서 南北接觸은 人道的接觸에서 실마리를 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接觸交涉의 本領은 軍事分界線下의 緊張을 緩和시키는데 있을 것이므로 북괴의 戰爭挑發, 武力侵攻, 外軍撤収, 軍縮등 軍事的課題로 다루는데로 옮겨갈 추세에 있다고 볼수도 있다.

(6) 南北接觸問題는 日本問題와 間接적으로 연관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南北接觸의 成敗는 항상 日本과 북괴와의 關係改善이라는 外交的 挑戰을 야기할 것이며, 中共의 関心事에서 볼때 「日本軍事主義의 外的擴大」는 우려한다는 觀點에서 南北接觸의 向方에 적지 않은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7) 또 한가지 南北接觸 과정에서 導入될 것으로 예견되는 要因은 來年 유엔總會에서의 南北韓 同時招請問題와 가까운 將來에 직면하게 될 會員國 普遍性原則에 立脚한 分斷國 同時加入問題이다. 이 두 問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難題는 기실 名分論的 딜레마이긴 하나 지금까지 고집해온 「不在政策」과 북괴의 地位 即 存在問題에 대한 우리의 對內外的 충격이다.

南北接觸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 문제되지 않는 이 存在 (entity) 問題가 (가) 休戰會談의 講和措置에서의 政治的 「實體」 인정문제, (나) 유엔舞臺에서의 同時招請, 同時加入에의 한 「一民族 複數國家」論의 위험, (다) 그로 인한 大韓民國의 唯一代表性에 대한 도전 등으로 戰後 最大의 難問에 부딪치게 된다

는 점이다. 그러나 이 存在問題에 대한 우리의 適應도 그
一線은 南北接觸過程에서 행해질수록 相對的으로 有利한 狀況에
놓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 南北接觸에 의한 「存在」問題接近

現下 南北接觸方式 即 다만 南北赤會談과 같은 非政治的 人道的 接觸단계에서는 北괴의 法的地位나 存在 (entity) 承認問題는 야기 되지 않는다. 비록 南北赤會談의 初期에 赤十字社의 呼稱問題가 제기되었으나 이 會談의 中立性·人道主義·普遍性原則의 性格上 난처한 相互存在 承認問題가 介在한 이 문제는 應당 留保될 수 있다고 보겠다. 存在問題는 留保하고 人道的 關心만 논의할 수 있다는데 南北赤會談의 特性이 있는 동시에 그 限界性이 또한 있다. 呼稱問題에서 일단 便宜主義로 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存在問題 以前의 相互關心事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反證이며 그 相互關心事의 量과 質을 어느 限度까지 넓혀나갈수 있는가에 이 南北赤會談 단계의 接觸의 成敗가 걸려있다고 하겠다.

이미 앞에서 南北赤會談은 接觸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手段이지 實質的 妥結問題는 人道的 家族찾기 이외의 과제 即 北괴武力侵攻 등 軍事的 緊張面의 共同關心事라는 根本目的이 있다는 假定下에 本論議는 展開된다. 그러면 8·15 以後 現在까지 北괴의 地位는 어떤 것이며 그 實質的 次元에서 그네들의 地位는 어떻게 變했는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소 軍政段階 : 1945年 8·15 以後 소련 占領年下

3·8線 以北은 「소련軍 占領地域」(Soviet zone)에 불과하고 소 軍政當局 이외에 아무런 公權力도 인정할 수 없다.

(6) 6·25 以前 段階 : 1947年 11月 14日 유엔總會決議 第 112号

(11) 「韓國獨立問題에 관한 決議」와 1948年 「韓國의 獨立問題에 관한 決議」(總會決議 第 195号(Ⅱ))와 1949年 總會決議

議 第 293 号(VI) 「韓國의 獨立問題에 관한 決議」에서 「國際聯合 韓國 臨時 委員團이 監視 및 協議를 할 수 있었고 全 韓國國民의 大多數가 거주하고 있는 韓國地域에 대한 效果的인 統治力과 司法權을 갖고 있는 合法的政府(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어 있다는것」의 유엔決議가 北韓地域은 不法集團의 占拠狀態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即 北韓地域에는 唯一한 合法政府인 大韓民國이 公的으로 승인할 아무런 公權力도 不在라고 볼 수 있는 特殊地域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國內管轄權(domestic jurisdiction)은 主權의 屬性인 이상 38 線以北地域은 그 管轄權을 不法集團에 의해 皮뽕당한 상태였다고 解釋된다.

- 3) 6·25 動亂以後 段階 : 6·25 動亂은 通常的인 國家間의 戰爭(war)가 아니라 한 國家안에서의 正統政府에 대한 反亂(rebellion)으로 우선 해석된다. 따라서 武力反亂을 도발한 北韓當局은 그 初期단계에서는 「反徒團體」로 인정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主體性이 없고 따라서 그 反亂側에는 國際法的權利나 義務는 法理論上 歸屬되지 않는다. 이 경우 6·25 動亂時의 法的狀態는 「蜂起(insurrection)」로 간주된다. 「蜂起」란 反亂이 상당한 地域에 전파되어 國家主權者의 命令이 實施되지 않게 된 段階를 말한다. 다시 反徒勢力이 커져서 나라는 二分天下할 정도의 武力抗爭단계에 도달한 것을 「內戰(civil war)」이라고 하는 것이다. 美國의 南北戰爭이 曲折的인 「內戰」인데 과연 6·25 動亂은 「內戰」인가 「戰爭」인가 하는 점이다. 1947年의 제네바 四條約에서 「國際的 性質을 갖지 아니한 武力紛爭」(第三條)을 통상의

「内乱」의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反乱団体」로서 不法集團으로 간주되기에 足하다.

우리는 이 時点에서 6·25 動亂을 「소요」상태로 보느냐 「蜂起」상태로 보느냐 「内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북괴集團의 地位가 규정된다. 문제는 反亂이 진전되어 兩當事者가 交戰者(berigerency)로서 対決했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反亂의 경우에도 反徒를 自己와 對策한 國際法上の 權利義務를 가진 「交戰団体」로서 承認하고 一定地域에서의 責任을 回避하는데 有利한 경우가 있으나 「國際化한 内戰」으로 간주할 때 6·25 動亂에서 正統政府인 大韓民國政府가 북괴集團을 對等한 交戰団体로 承認했는가는 유엔軍司와의 사이에 체결된 休戰協定에서도 그점은 아주 미묘하다.

(4) 유엔軍參戰段階: 1861 - 65년의 미국의 南北戰爭(civil war)

이 놓은 國際的 關心에도 불구하고 國內의 政治紛爭을 전혀 自國內問題로서 處理되었으므로 「國際化하지 아니한 内戰」의 曲形이다. 이 「内戰」은 그 解決에 있어서도 自國內問題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오늘날 북괴가 주장하는 「民族內部問題」云謂하는 저이는 「國際化한 内戰」의 講和 단계에서의 「國內化」란 文脈에서 새로운 名分을 내걸려는 것이다. 만일 「國內化」의 文脈에 귀착되면 6·25 動亂은 内戰의 性裕이 부여되고 북괴의 地位는 우리와 對等한 交戰団体로서의 國際法上の 權利를 얻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南北接觸과정에서 「内戰」의 논리가 潛入해 들어오는 위험을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6·25 動亂은 1950年 6月25日의 유엔의 「戰爭行為의 中止에 관한 決議」와 同 6月27日「北韓軍의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攻撃이 平和를 파괴하는 要因이 된다고 断定」한 유엔決議로 인하여 同 7月7日의 國際聯合 統合軍司令部 設置의 決議를 거쳐 유엔에 대한 「平和破壞의 要因」으로 북괴集團의 도발이 규정받게 되었다.

유엔軍이 이미 「侵略者」로 판정된 북괴와 이를 支援한 中共軍과의 交戰하기에 이르렀을때 交戰狀態는 「戰爭」이 아니라 一種의 「制裁」行爲로 간주된다. 당시 美國國際法學會는 이 事態에 대해서 유엔軍의 「行動」을 適用할 法規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결국 유엔軍의 行動에 의해서 야기된 事態의 局面만을 抽象해서 이해할 때 그 局面은 介入以前 即 國際化 以前과는 다른 새로운 事態 即 戰爭이나 內戰이 아니다 유엔은 相手方보다 한層 높은 次元에서 行動한 「侵略者」에 대한 懲罰을 행한 制裁行爲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制裁者와 侵略者의 差別의 原則이 適用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層 높은 次元의 制裁者的인 유엔軍의 介入이 解消될때 남는 狀態는 어떤 性格의 狀態인가? 다시 말해서 유엔軍 介入以前의 6·25 動亂狀態도 북괴는 「侵略者」「不法集團」의 反亂으로 간주되고 그 規模에 따라서는 內戰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야기된다.

- (5) 休戰以後의 段階: 休戰協定은 通常的인 國家間의 戰爭에 대한 종결조치로서의 講和條約 (peace-treaty)와는 전혀 다르다. 休戰協定에 조인한 協定主体인 유엔軍은 「制裁」行爲와 戰爭防止作用에 국한해서 行爲할 수 있고 또한 이 動亂의 國際的

局面에만 관여할 수 있는 資格과 權限上의 限界가 있으므로 그 協定은 消極的이긴 하나 단순히 「停火 (cease-fire)」에 同意 (agreement) 한데 불과한 것이다. 講和措置에 가서는 유엔이 介入한 6·25 動亂의 局面이 制裁者란 高次元에 있으므로 對等한 交戰相對者로서의 北괴의 地位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엔軍 스스로가 講和條約의 主体로 될 도리가 없다. 6·25 動亂에서 유엔軍은 安保理의 決議에 의해 戰亂이 平和破壞의 大戰에 까지 擴大되는 것을 防止하는데 그친 消極的 介入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動亂에서 유엔軍이 간여한 部分은 火災時의 消火官처럼 「停火」에 국한해서 行爲하고 國際化 以外의 分斷의 原因 그 자체는 이 事件 이외에도 아랍, 이스라엘 事態, 카시밀의 歸屬問題 越南戰 등에서도 언제나 未決로 남겼다.

이로 인해서 이 未決문제 即 統一問題는 유엔이 더 이상 介入하기 난감한 當事者간의 妥結點으로 미루워지게 되는 傾向이 생긴다.

만일 6·25 動亂 이래의 韓國事態가 停火에 의한 軍事的 對決事態에 머물러 있어서 그 終結措置가 取해져야 한다면 實質的인 交戰相對者로서 南北韓의 兩政治集團이 事實上的 「実体」로서 등장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6·25 動亂의 民族的 悲劇을 도발한 北괴集團은 우선 反民族的 「戰爭犯罪者」요, 不法的 犯法集團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南北接觸의 狀態에 있어서 北괴는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存在」로 變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그 「存在」問題가 國際政治上에서는 분명 現實主義的

承認으로 흘러 도리어 「不在의 政策 (Abili-politik) 을 고
집하는 쪽을 孤立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그 「不在政策」의 變化가 유엔으
로 부터 強逼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積極적으로 우
리 스스로가 먼저 妥結지워 놓는 쪽이 有利한가를 決斷할 때
가 온것 같다.

5. 南北接近에 대한 对内外的对備策

오늘날 韓半島에서 새로 조성된 事態는 四強体制의 多元的勢力均衡속으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韓國이 「國際化되었던 內戰(civil war)의 國內化」의 危局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韓國問題가 國際的次元에서 兩極化体制의 相對的安定을 享有하다가 70年代 戰後体制의 改竊과 동시에 「國內化」라는 名分の 優先이 강요되고 이로 인해 南北當事者간에 正統性을 專有하려는 相爭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이 새로운 正統性競爭이 「힘의 政策」에 호소하여 「第二의 6·25」를 再起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別問題로 하고, 四強体制下에 列強이 韓半島에서 더 이상 現狀打破의 冒險을 餘餘地가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現實」是認下에 이른바 「合法的利益」만을 추구하는데 만족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問題는 現狀의 公式化이며 그것은 南北當事者간의 「和解」를 前提로 한다.

여기서 유엔軍을 韓側의 代表로 했던 冷戰型 停戰會談과는 달리 脫冷戰型의 板門店會談의 形式과 性格의 變動이 結果될 것은 거이 自明하다. 70年代 以前의 停戰會談은 南北當事者가 對座한 「南北接觸」이나 「南北交涉」과는 전혀 그 性格이 다른 것이며 國際化한 「內戰」의 停火狀態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變動될 70年代型의 軍事停戰會談과 71年 9月20日에 시작된 南北赤會談은 兩者가 共히 非政治的이긴 하나 軍事的, 人道主義的인 「接觸」「交涉」의 性格을 띠는 것이다.

이 「南北接觸」即 韓國化했을 경우의 停戰會談과 南北赤會談은 韓國問題의 脫冷戰性, 脫이데올로기性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1) 相互存在의 是認問題 : 지금까지 유엔軍司와 북괴간의 停戰會談에서는 그 目的과 역할 기능이 「停火 (cease-fire)」 即 戰爭狀態의 擴大防止, 監視에 局限되었으므로 韓國이 交戰相對者로 참여하지도 따라서 休戰에 同意하는 實體가 되는일을 免할수 있었다. 70年代이전의 북괴의 地位는 유엔軍이란 國際警察軍에 넘겨진 犯罪集團으로 우리가 간주하는데 편리했다. 적어도 停戰段階에서도 북괴의 地位를 우리 韓國으로서는 交戰相對者가 되지 않을수 있었고 북괴를 反亂團體에서 內戰段階로 발전된 交戰主體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을 만큼 철저한 「不在의 政策」에 有利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일단 南北接觸이 시작되면, 그것이 비록 南北赤會談과 같은 非政治的 接觸-交涉이라 할지라도 實質的인 存在承認에 말려들게 되고, 더욱이 戰爭狀態의 종결을 위한 「議和」의 단계에 가서는 유엔軍의 介入은 그 名分이 弱화되고 交戰實體兩側이 対応하는 것은 不可避하게 된다. 存在承認問題를 감안해 볼때 軍事停戰會談보다는 南北赤會談이 훨씬 수월한 자리이고 交戰相對者로서의 存在承認問題마저 免除된 자리다.

여기 南北赤會談에서 마저도 口號가 삽입된 赤十字社의 正式名稱을 불러줄수 있는나의 呼稱問題도 인해 存在承認問題가 대두되고 있고 接觸의 進展에 따라서 「不在政策」의 名分的次元은 더욱 窮地에 몰릴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결국 前進的이고 現實主義的 論理에 서서 漸次的 段階的 適應이 不可避한것 같다. 이 문제 留保의 時限은 얼마남지 않았고 유엔에서의 同時招請 더 나아가서 分斷國 同時 加入때까지로 볼 수 있으나 벌써 그 이전부터 점자적 順應이 바람직하다.

그 代案으로서는 積極的으로 北쪽에서 우리의 存在承認을 強要하는 일이다. 그 次善策으로서는 우선 非이데올로기의, 非敵對的인 韓國呼稱을 相對方에게 먼저 提案하고 그 交換條件으로 北側稱號의 改稱을 고려하는 方向에서 研究되어야 한다.

(2) 「軍事主義」의 對決의 先決解消問題: 現下 進行中인 南北接觸의 性格과 當면목표가 明白히 設定되고 조속히 相對方에게로 양해되어야 한다. 即 南北接觸은 「統一」이라는 現狀變動이나 現實打開의 論理에서 벗어난 단순한 分斷現實의 固定化에 目的이 있다는데 脫名分的인 相互諒解가 先行되어야 한다. 兩側이 名分的에 일만 고집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成果도 기대할 수 없다. 이 南北接觸은 그것이 成果를 걸우지 못할때 極東의 緊張緩和措置의 일환으로 북괴-日本間의 不可侵條約도 成立될 公算이 적지 않고 그러한 결과는 우리의 國際的 地位를 相對的으로 低下시킨다는 長期的 眼目下에서 運營되어야 한다.

또한 「南北接觸의」 課題에 대해서 美·中共間에 利害一致點이 무엇인가를 고려해보면 이 接觸에 許用된 合意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韓國問題에 대해서 美·中共간의 새로운 利害一致點은 日本의 더 이상의 成長擴大 막고 소련의 介入을 排除한 極東에서의 緊張緩和 型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韓半島의 非軍事化-「緩衝地帶化」-로 귀결된다. 만일 韓半島에서 緊張이 激化되면 자연 소련의 介入可能性이 中共을 上回하고 따라서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촉구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韓半島에서 다시 利害의 衝突을 야기시키지 않고 勢力간의 競合의 餘地를 빨리 없애는 作策이 南北接觸-交渉의 當면과제가 된다.

그리고 南北간의 緊張再發로 軍力對決이 계속된다면 이는 必損

닥트린下에서는 결국 日・中共간의 極東에서의 兩極化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日本의 軍國主義化의 길을 넓게 열어주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괴는 자연히 소련이나 中共에 대한 依存度를 높이는 결과가 되고 相對的으로 우리의 對日依存度를 增大시키는 일이 강요될 것이다.

70年代 韓國分斷現狀에는 크게 ① 緊張激化될 경우의 日・中共의 兩極化속의 分斷과 ② 緊張緩和化될 경우의 日-中共간의 緩衝地帶으로서의 韓美紐帶가 弱화되지 아니한 分斷型의 두가지 可能性이 있다. 美・中共은 後者の 分斷型에 對의 「講和」를 통한 韓國과 極東平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이 문제는 南北當事者간의 軍事主義的 對決의 緩和=非軍事化를 위한 相互諒解를 交渉의 先決問題로 제기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이미 朴大統領의 8・15宣言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冷戰型이데올로기의 現實化・主體化問題：南北接觸은 現實主義的次元에서 전개되지 않을수 없고 「當事者對話의 優先」의 原則은 자연 冷戰型의 二元的思考와는 다른 새로운 民族自決의 論理가 대두하게 된다. 70年代에 와서 兩極化 이데올로기政治, 名分主義 軍事力至國主義등 冷戰型思考가 虛偽意識化하고 있다. 과거 世界를 兩大이데올로기圈으로 二分天下했던 시대의 國內秩序나 國內의 名分 등은 무너지고 多元的 小中心의 亂立時代에 들어서서 「兩者其一의 論理」는 無力해진 것이다. 이제 多元化世界에서는 矛盾의 논리나 二元的 世界觀은 弱化되고 相對的인 「共存의 論理」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서 북괴의 反美・反自由世界的 共產主義이데올로기가 「平和共存」路線과 갈등을 이르기게 되고 對外的으로 平和共存政策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될수록 對內的 結局은 더욱 弱化・解體의

위기를 마지막에 된다.

북괴에서 對內的 社會統合은 積極的 「敵」의 設定과 獨裁的 陰謀論의 存立에서만이 가능했다. 만일 북괴가 平和共存政策을 계속 追求해야 할때, 對內的 陰謀論的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이르게 社會統制上의 難關에 부딪치게 될것은 自明하다.

바로 북괴의 冷戰型의 硬化된 이데올로기 風土가 南北接觸에서의 우리의 強点이다. 그러나 그 우리의 強点を 利用하려면 現實適應을 위한 硬化된 反共이데올로기의 修正・완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대신 思想戰에서도 競爭的 共存의 논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차지하게 됨을 留意할 必要가 있고 또한 脫冷戰的 現實은 자연 非政治的 非이데올로기의 領域에서의 思想的 對決 即 政治的인 면 보다 非政治的 民族的 내지는 民俗的인 思想이 자웅을 결하게 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分斷의 固定化에서 이제 統一의 名分을 충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次元은 民俗的(Volkisch)인면 即 가족, 祖先崇拜, 結婚, 衣裳, 民族, 藝術, 言論 등에서 同一性(identity)을 維持, 強化한다는 名分이 대두되게 마련이다.

(4) 「一民族一國家의 原則」留保의 問題: 南北接觸은 결국 現實是認의 논리우에서 전개됨으로 分斷現實의 公式化로 나간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近代的 民族國家의 原則이었던 「一民族一國家」의 原則이 否定당하는 現實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西歐近代의 民族主義는 한 民族은 한 國家를 가져야함을 缺則인것 처럼 여겨 民族國家(nation-state)의 形成을 그 理想으로 삼아 왔다.

「統一」의 名分을 따지고 보면 기실 「民族國家」建設에 대한 願望에 不過하다. 그런데 70年代에 들어선 韓國에서도 獨逸에서와

같이 分斷化의 統合이 오히려 非現實的인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現實的인 것은 統一에 優先해서 平和=和解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獨逸의 경우 統一國家에의 원망은 K. Jaspers 같은 指導者의 눈에도 비스마아크獨逸에의 復歸라는 復古的 幻想으로 받아들여졌다. 1966年 Jaspers는 「비스마아크帝國의 再現」은 不必要하다고 해서 獨逸統一의 名分에 正面으로 反對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現實主義的인 分斷國家論을 전개할 때 Brandt처럼 한 民族社會에 있어서도 複數國家의 存在가 결코 그 民族의 文化的 歷史的 單一性を 태치지 않을 수 있다는 主張을 뒷바침해야 하게 된다. 東西獨에는 文化交流 등을 통해서 最少限 民族的 統一性의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간주되나 그것만으로는 統一念願을 滿足시켜 주지 못함으로 다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의 分斷固定化가 반듯이 分斷의 永久化로 複數國家의 固着化도 아니될 것이라는 담보로서 論理的으로 帰結되는 代案은 將來에 兩政治的 單位의 獨自性を 어느정도 保存하는 條件下에서의 二元的 統合 即 federalism의 새 統一名分은 진지하게 研究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것은 統一論爭이 南北간게 야기될 때 마다 솔직하게 現實的 立場을 取하는 쪽을 언제나 守衛에 몰아넣게 될 때 이 名分이 代案으로 마련되어 있을 必要는 나날이 增大하기 때문이다.

〔要約〕

本論文은 70年代初 南北接觸의 對內外的 性格을 극히 制限된 「戰爭狀態의 終結」을 위한 或種의 「講和」措置에 當事者對座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大前提를 삼는다.

南北接觸은 分斷의 根本原因을 解決하려는 努力과는 그 課題나 範圍에 있어서 無關하다고 본다. 따라서 南北接觸의 成敗는 統一의 名分보다 平和의 名分이 優越한 狀態의 變化에 있다.

韓國分斷의 暫定的 凍結化를 위해서 南北韓當事者간에 「民族自決의 原則」이 도입되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北괴의 法的地位 即 「存在」問題를 야기시킨다.

北괴의 地位問題는 6·25 亂以前狀態와 유엔軍의 制裁者의 次元에서의 介入狀態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前者의 狀態에서는 「反亂團體」이나 後者의 狀態에서는 平和破壞의 「侵略者」이다. 萬一 後者의 狀態가 해소될때 北괴의 地位는 正統政府의 國內管轄權內에서 소요, 勇기를 이르킨 「反徒集團」의 性格을 가지게 되고 다시 「內戰」(civil war)의 論理가 介在하게 될 위험성이 增大한다.

특히 軍事停戰會談의 首席代表 交접와 관련해서 「韓國化」는 南北赤會談과는 다른 停戰會談에서 南北兩側이 「交戰團體」로 등장하게 되어 밖으로 유엔 同時招請과 同列의 存在承認問題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모두 韓國의 停火(cease-fire)상태가 「講和」상태로 移行하려면 必要的으로 부수될 北괴의 地位問題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緊張緩和方式과 그 現實主義的 接近에서 南北接觸의 存在方式은 分斷原因의 해소에 관한 政治協商 以前단계에 해당하는 단순한 軍事分界線의 「韓國化」 停戰에서 「講和」措置에 로

移行하는 軍事的 對決의 緩和作業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우리의 對內外的 對僞策의 原理가 導出되어야 하고, 南
北接觸의 時限 역시 制限된 美·中共協調下의 새로운 東北匪秩序
形成의 타이밍에 맞추어야 함으로 永期的이 아니라고 전망된다.